

提案說明

-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
-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
-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
- 먼저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이 안건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본청의 실·국과 직속기관·사업소를 통합규정하고, 제2단계 사업소 등 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.
-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
 - 본청의 실·국·분부를 3실 8국으로 규정하고, 청소년에 관한 업무 주관국을 보건복지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조정하며(안 제4조 내지 제15조),
 - 시립대학교, 지방공무원교육원, 보건환경연구원, 소방서, 소방학교, 농업기술센터, 시립기능대학 등 7개 직속기관의 설치 및 소관사무를 정하되, 시립대학교와 시립기능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, 농촌지도소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(안 제16조 내지 제37조),
 - 시립미술관을 신설하고, 건설시험소와 공업시험소를 품질시험소로 통합하는 등 3본부 24개 사업소의 설치 및 소관사무를 정하고(안 제38조 내지 제122조),
 - 부칙으로 직속기관·사업소 설치조례 31개를 폐지하며, 기구조정에 따른 관련 35개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
 - 참고로 말씀드리면, 기능전환·민간(사무)위탁 및 재단법인화 대상시설에 관하여는 우선 규정 후 관련조치가 완료되면 개정할 예정입니다.
 - 기능전환 대상 : 기능대학 → 청소년직업전문학교
 - 민간(사무)위탁 대상 : 농업기술센터(농촌지도소), 서부여성발전센터,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부시설, 차량정비사업소, 근로청소년회관, 청소년사업관, 하수처리사업소 1개소
 - 재단법인 : 세종문화회관

- 다음은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이 안건은
 - 소방파출소 등의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을 확보하고, 119종합방재센터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.
-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 -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1,531명에서 11,401명으로 130명 감축하고(안 제2조제1호),
 - 신당·창동·수색·개포 및 가락소방파출소와 성동소방서 수난구조대를 신설하고, 119종합방재센터 인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소방직 정원을 현행 4,593명에서 4,746명으로 153명 증원하며(안 제2조제2호),
 -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현행 223명에서 200명으로 23명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(안 제2조제4호)
- 다음은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이 안건은
 - 2단계 구조조정으로 민간위탁 결정된 4개 시설과 2개 신규시설의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고, 업무조정에 따른 일부시설의 소관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
-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
 - 민간위탁 결정된 「서부여성발전센터, 시립청소년사업관, 시립동부근로청소년회관, 시립남부근로청소년회관」의 설치·위탁근거를 마련하고,
 - 신설되는 「시립신림청소년센터, 시립청소년종합상담실」의 설치·위탁근거를 마련하며,
 - 시립아동복지시설의 소관국을 보건복지국에서 여성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
-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감사합니다.

서울特別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
檢討報告

김득의 건

<p>□ 개정 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사업소 구조조정 완료에 따라 현재 개별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본청의 실·국과 직속기관·사업소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일조례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.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2장 본청 실·국·본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예산실의 시정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1부시장 산하에 신설되는 정보화기획단 소관으로 이관하고 - 보건복지국에는 노숙자, 부랑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여성보호,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은 여성정책관에게, 청소년복지,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이관하였으며 - 문화관광국에 2002년 월드컵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- 도시계획국의 지리정보체계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1부시장 산하의 정보화기획단 소관으로 이관하였음. ○ 제3장의 직속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시립대학교, 지방공무원교육원, 보건환경연구원, 소방서, 소방학교, 농업기술센터, 시립기능대학교 등 7개 기관을 두고 -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와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를 각각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 관한조례와 서울시립기능대학운영에 관한조례로 하고 조문 중 일부를 변경 또는 삭제하여 시행하며 - 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가 개정('98.8.31 공포시행)됨에 따라 명칭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. ○ 제4장 사업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본부, 24개 사업소에서 기존 건설시험소와 공업시험소를 품질시험소로 통합하고, 시립미술관을 신설하여 27개 사업소로 하는 것임. ○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3장 직속기관 및 제4장의 사업소설치조 	<p>레 통폐합으로 인하여 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 등 31건을 폐지하고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 등 35개 조례는 1~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기구명칭, 직위 등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.</p> <p>□ 검토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개정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립기능대학은 현행 설치조례가 폐지 또는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'99년도 신입생 모집에 다기능 기술자 2년 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도 사료되며 ○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거 1급~3급의 실·국장급 담당관의 설치를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, 이는 4급 상당의 과·담당관의 설치개념과 분리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동 규정(대통령령)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</p> <p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검토의견</p> <p>□ 개정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원총수의 구분에 있어 집행기관의 정원을 11,531명에서 130명을 감축한 11,401명으로,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23명에서 23명을 감축하여 200명으로 하고,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현행대로 332명으로 하며, 소방공무원의 정원 4,593명은 소방과출소 5개소(신당, 창동, 수색, 개포, 가락) 및 성동소방서 수난구조대 신설과 119종합방재센터 보강에 따른 소요인력 153명을 증원하여 4,74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, 정원총수 16,679명의 증·감은 없습니다. <p>□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94개 대상기관의 총 정원을 13,741명에서 6.6%에 해당되는 906명을 감축하여 12,835명으로 하는 것으로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차는 금번 94개 기관에서 264명을 감축하고(직영사업소 83개 기관 인력감축 422명, 시의회사무기구 인력감축 23명, 민간위탁 등 대상 9개 기관의 위탁 전 감축 91
--	---